

보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보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보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보 성 군 의 회 의



1. 제정이유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안 제4조·제5조)

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 운영계획 수립(안 제6조·제7조)

마. 운영·위탁 등 및 가족품앗이 활성화(안 제8조·제9조)

바.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안 제10조·제11조)

사. 시행규칙(안 제12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예고 기간: 2026. 10. 2. ~ 10. 7.(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의견을 보성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061-850-5829)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곳: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의회 의회사무과 (우 59455)

보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성군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녀양육 관련 정보 교류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지역 내 돌봄 수요와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육아나눔터의 위치와 규모를 정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및 개선,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 물품 구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등 육아 물품의 이용·대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보호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운영 지원
5.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제공
6. 그 밖에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이용자의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 및 주말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공동육아나눔터 내부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시간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운영·위탁 등)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내의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관리)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설비의 안전점검, 비상시 대응체계 구축, 안전교육, 안전수칙의 마련·게시 등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운영 상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19., 2025. 10.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근거규정

-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미첨부 사유

- 본 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의 규모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 또한 운영시간 확대, 공간 조성·개선, 물품 구입 및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운영계획과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소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따라서 위 제1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